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은행 영업점 폐쇄 신고제도 도입 등〉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9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영업점 폐쇄 신고제도 도입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 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라는 우려가 있음.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영업점 폐쇄 신고제도 도입 등

□ 개정안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 6개월 전까지 영업점 폐쇄 사전영향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의 내용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은행은 영업점 폐쇄 3개월 전까지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2(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점 폐쇄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결과 2.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한다. ④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현행	개정안
	영업점의 폐쇄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안내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확대와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 중 대면업무처리(창구) 비중은 2023년 현재 5.1%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비중 >

구분	창구	CD/ATM	텔레뱅킹	모바일/ 인터넷뱅킹	전체
2018년	8.8%	30.2%	7.9%	53.2%	100.0%
2020년	6.8%	20.2%	4.9%	68.1%	100.0%
2022년	5.5%	14.2%	2.6%	77.7%	100.0%
2023년	5.1%	11.5%	1.8%	81.7%	100.0%

출처 : 한국은행, 입출금·자금이체 거래건수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비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점포를 폐쇄하면서 은행의 점포 수는 최근 10년 동안 약 24% 감소하였음.

< 은행 점포수 변동 추이 >

(단위: 개소)

연도	'12말	'17말	'18말	'19말	'20말	'21말	'22말
점포수 (전년 대비 증감)	7,673	6,789	6,766 (△23)	6,740 (△26)	6,427 (△313)	6,121 (△306)	5,831* (△290)

주: '22년말 점포수는 '12년 점포수('10년 이후 점포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24% 감소
자료: 금융감독원

- 이로 인해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금융에 취약하여 은행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¹⁾의 경우 점포 감소가 금융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비해 금융인프라가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주민들이 점포 폐쇄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²⁾
- 우리나라와 같이 점포 감소를 겪고 있는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기관과 금융업계는 점포 감소의 가속화가 금융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포폐쇄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1) 은행 점포이용률(출처: 한은) : 53.8% (70대 이상 평균) vs. 25.3% (전 연령층 평균)

2) 이구형,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93호, 2021. 11.22.

< 주요국 연도별 점포수 추이 및 감소율('17년~'23년) >

(단위 : 개)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17년 대비 감소율
한국	6,789	6,766	6,740	6,427	6,121	5,831	5,747	△15.3%
영국	9,690	9,090	8,525	7,675	6,965	6,305	5,266	△45.6%
호주	5,694	5,485	4,975	4,769	4,323	4,012	3,588	△36.9%
미국	77,821	76,772	74,721	72,756	70,314	69,590	69,684	△10.4%

기준 : (한국, 미국) 12월말, (영국) '23년은 11월말, (호주) 6월말 기준

출처 : (한국) 금융감독원, (영국) 의회 도서관, (호주) 건전성감독청,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 주요국의 점포폐쇄절차는 공통적으로 예상치 못한 점포폐쇄로 인해 고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³⁾.

< 주요국 은행 점포 폐쇄절차>

(사전안내) 고객이나 감독기관에 대해 최소 12주에서 최대 24주(또는 6개월)에 걸쳐 점포폐쇄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
(사전안내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폐쇄대상 점포와 폐쇄일자, 대체수단의 이용, 점포폐쇄에 대한 사전분석 결과나 의견수렴 절차 관련 내용 등
(의견수렴) 미국과 캐나다는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서면요청과 금융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체수단 검토나 의견수렴 등을 위한 회의절차를 규정
(규정형식) 주로 감독기관의 지침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거나 (미국) 은행권 자체규약으로 규정하는 경우(호주), 감독기관 지침과 은행권 자체규약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영국) 등

자료: 이구형,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18호, 2022.1.27.를 요약 정리한 것임.

3) 이구형,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18호, 2022.1.27.

【참고자료 3】 주요국 은행점포 폐쇄절차 비교 참조

□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23.4월)」⁴⁾를 마련하여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소비자가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음.

○ 은행권도 이를 반영하여 점포폐쇄 전 외부영향평가 실시, 폐쇄결정시 대체수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⁵⁾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⁶⁾ 이에 따라 은행권의 점포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임.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포폐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소외를 예방하는 데에 미흡

4) 【참고자료 1】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세부내용 참조

5)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은행연합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자체규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님. 주요내용은 【참고자료 2】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주요내용 참조

6) 그 외에, 은행권은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음.

- (디지털 무인점포) 화상상담창구(디지털데스크), 스마트 키오스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을 배치하여 창구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무인점포 운영 중
- (우체국 창구제휴) 10개 은행*은 우체국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우체국의 전국적인 점포망을 활용하여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취약계층 및 농·어촌 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 씨티(’98년), 기업(’05년), 산업(’11년), 전북(’13년), 신한·하나·우리·국민(’22년), 아아엠·경남(’23년)
- (은행 간 창구제휴) 은행 간*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점포수가 적은 지역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 * 수협은행-조합, 농협은행-지역 농·축협조합, 부산-경남, 산업-하나
- (공동점포) 은행 점포수 감소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공동점포 운영*
 - * (신한-국민) 경기도 양주, 경북 영주, (국민-부산) 부산, (우리-하나) 경기도 용인, (국민-씨티) 대전

자료: 은행연합회

7) 점포수(개, 기말): (’21) 6,121 → (’22) 5,831<△290> → (’23) 5,747<△84> → (’24.6월) 5,724<△23>
(자료: 금융감독원)

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영업점 폐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점 폐쇄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은행이 점포폐쇄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고, 영업점 폐쇄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이용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전영향평가 및 사전안내 등 점포폐쇄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것과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완화된 의미의 허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항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이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 폐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여부는 수익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경영판단 사항이므로,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신고제도가 법제화되면 점포 운영의 경직성이 증대되어 디지털금융 확대 등 급변하는 경영상황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감독당국에 금융기관의 영업점 폐쇄 의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은행들의 절차규정 준수를 통해 고객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⁸⁾

□ 그 외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신고받은 내용이 ‘영업점의 이용자이익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⁹⁾, 포괄위임금지의 원칙¹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

8) 이구형,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18호, 2022.1.27.

9)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기준·절차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함.

10)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에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됨.

음. 따라서 신고 수리 요건 중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외에 사항은 위임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신고제도를 신설하면서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제도 신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영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법률 및 금융 관계 법률에서 ‘영업점’, ‘지점’, ‘출장소’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시중에서는 ‘점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폐쇄 신고제도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¹⁾

11) 은행 점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점”으로,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결의 사항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에 따른 이사회결의 권한 중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 정관은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

제393조(이사회결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사회결의 권한)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결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23.4월) 세부내용

현 행	개 선
(1) 사전영향평가 유명무실 ▶(의견수렴) 별도 의견수렴절차 없음 ▶(외부전문가) 금융·법률 분야 1인 * 소비자 분야 전문가 참여 부족 ▶(평가항목) 수익성 관련 항목 비중 ↑ ▶(대체수단) 무인자동화기기(ATM) 위주	(1) 사전영향평가 내실화 ▶(의견수렴) 폐쇄결정 전, 의견수렴 실시 * 수렴 후, 영향평가 재실시 · 대체수단 조정 ▶(외부전문가) 1인 → 2인으로 확대 * 2인 중 1인은 지역인사로 선임 ▶(평가항목) 수익성 관련 항목 제외 ▶(대체수단) 대체점포 우선 마련 *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대체수단 불인정
(2) 정보 공개 제한적 ▶(폐쇄안내) 기본정보 위주 ▶(경영공시) 연1회, 폐쇄·신설 점포수 ▶(비교공시) 없음	(2) 정보 공개 범위·내용 확대 ▶(폐쇄안내) 영향평가 주요내용 등 추가 ▶(경영공시) 연4회, 사유·대체수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신설 · 폐쇄현황 *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3) 소비자 지원·보상방안 부족 ▶(사후평가) 사후 의견수렴절차 없음 ▶(지원방안) 별도 지원·보상 부족 ▶(금융교육) 주민 대상 교육 부족	(3) 소비자 지원·보상방안 마련 ▶(사후평가) 점포폐쇄후, 사후평가 실시 ▶(지원방안) 실질적인 지원 확대 *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및 수수료 감면 ▶(금융교육)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 모바일·인터넷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참고자료 2】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주요내용

(’24.9.6. 은행연합회)

① 점포폐쇄 결정 이전 사전의견수렴 실시

- 점포폐쇄 결정 이전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대상점포 인근 지역 의견청취
 - 은행별 의견청취 절차에 의견청취 방법·기간, 의견제출 방법 안내방안, 의견청취 결과 반영방안 등을 포함

[참고] 지역 의견청취 절차 관련 고려사항

- 의견청취 방법·기간 마련
 - (예)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청취(1~2개월 기간)
일정기간 설문 시행(1~2개월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설명회 개최 등
- 의견제출 방법 안내방안 마련
 - (예) SMS/LMS, 홈페이지, 영업점 공고 등
- 의견청취 결과 반영방안 마련
 - (예)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 재검토 등

② 점포폐쇄 시 창구 대체율이 높은 대체점포 우선 마련

- 사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고객 특성 등 고객의 금융접근성 영향도를 반영한 대체수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점포폐쇄 시 영향도가 높은 경우, 소규모 점포, 공동점포 등을 우선 적용하여 창구거래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토록 함
 - 점포폐쇄 시 영향도가 중간인 경우, 우체국/농·수·축협조합/타 은행 창구업무 제휴, 이동점포 등을 적용
 - 점포폐쇄 시 영향도가 낮은 경우 및 불가피한 경우에는 STM, ITM 적용

③ 사전영향평가지 외부전문가 참여

- 사전영향평가 시 외부전문가가 2인 이상으로 참여토록 하고, 외부전문가 중 1인은 폐쇄대상 점포소재 지역인사를 위촉
 - 외부 전문가는 금융·소비자보호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및 폐쇄대상 점포소재 지역인사로서 객관·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인 이상을 위촉

[참고] 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고려사항

- 외부 전문가 중 1인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연구·기고·저술·단체활동 등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 고려
 - 외부 전문가 중 1인은 폐쇄대상 점포소재 지역인사로서 지역적 특수성 및 점포 폐쇄에 따른 해당지역 영향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 고려
 - (예) 해당지역의 공신력 있는 인사*, 해당점포 일정기간 이상 장기거래 고객 등
- * 시·군·구 단위로 선정. 단,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동 단위로 선정
-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계열회사 포함) 및 주요 제휴·협력 거래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을 제외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인사 선정

④ 점포폐쇄 이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은행 소비자보호부서가 주관하는 사후평가를 통해 해당 지역 고객 불편사례 발생 확인 및 조치방안* 마련
 - * 필요 시 대체수단 조정 등을 통한 고객 불편 해소 등

【참고자료 3】 주요국 은행점포 폐쇄절차 비교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규정형식	연방 법률, 감독기관 지침	감독기관 지침	감독기관 지침, 은행권 자체규약	은행권 자체규약	감독기관 지침, 은행권 자체규약
사전통보	감독기관, 고객에게 12주 전 통보	고객에게 4개월 전 통보 ※교외, 격오지 점포로 인근 10km 내 점포가 없을 경우 6개 월 전 통보/지역 언론과 지자체 에 안내	(감독기관지침) 감독기관, 고객에게 12주 전 통보 (은행자체규약) 고객, 이해관계자에게 12주 전 통보	(대체수단 부존재시) 고객에게 24주 전 통보 (대체수단 존재시) 고객에게 12주 전 통보	고객에게 3개월 전 통보
통보내용	폐쇄대상 점포, 폐쇄일자, 폐쇄사유, 대체수단 정보 등	폐쇄대상 점포, 폐쇄일자, 고객의 계좌를 이전받는 담당 점포 소재지, 대체수단 관련 정보, 의견수렴절차 관련 내용, 기타문의처 등	폐쇄대상 점포, 폐쇄일자, 폐쇄사유, 대체수단 정보, 사전분석결과 요지 등	-	폐쇄대상 점포, 폐쇄일자, 폐쇄사유, 대체수단 정보, 기타문의처 등
사전분석	-	-	고객영향과 대체수단 관련 사전분석 실시 및 공표	-	고객영향과 대체수단 관련 내부분석, 외부 영향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참여
의견수렴·검토 회의 등	주간(州間)은행 이 중·저소득지 역 내 점포폐 쇄 시 지역주 민의 섬너요청 에 따라 감독 기관이 검토회 의 소집 가능	지역주민의 서 면요청과 다른 방법으로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경우 등의 요 건을 갖추었을 때 검토회의 소집 가능	(은행자체규약) 고객, 이해관계 자의 질의, 문 제제기에 응답, 필요시 직접 만나서 논의	지역사회와 긴 밀히 협의하고 점포폐쇄에 대 한 우려와 질 문에 성실히 답변	-
기타 사항	-	-	사전분석결과 최신화, 감독기 관, 고객 및 이 해관계자들에 게 필요한 정 보 지속 제공	소지바에게 금 용서비스 이용 에 필요한 정 보와 교육기회 제공, 대체은행 상품과 서비스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사고방지 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점검, 사고예방·민원 대응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18호, 이구형, 2022.1.27. 중 [표 5]

문 의 처

02)6788-5104
